

# 대법원 2017도15540

##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조희대)은 2017. 12. 22. 이철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, '피고인이 성남시 소재 성일고등학교 1, 2학년 과정에 재학하였고 전투경찰 시절 또는 군 제대 후 성일고등학교로 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고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하거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 발언 또는 게재 당시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'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도15540 판결)

### 1. 사안의 내용

#### ▣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해·삼척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됨
- 피고인은 사실은 성남시 소재 성일고 1, 2, 3학년 과정을 다닌 사실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일고를 졸업하거나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① 피고인의 공식블로그에 총선 출마선언문을 게시하면서 학력란에 '성일고 졸업'이라고 게재하고, ② 2016. 3. 7. 일요서울 인터뷰를 통해 '성일고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아 전투경찰 시절 졸업장을 받았다'는 취지로 발언하고, ③ 2016. 4. 8. MBC(강원영동)에서 개최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'성일고를 2년간 다닌 뒤 군에 입대하였고, 군 제대 후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아 졸

업장을 받았다'는 취지로 발언함

-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방송 · 신문 · 통신에서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

#### ▣ 소송 경과

- 제1심: 벌금 500만 원
- 원심: 제1심판결 파기, 무죄
  - ①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여러 차례 성일고로부터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, 이러한 졸업증명서는 피고인의 성일고 재학 및 졸업 여부에 대하여 강한 증명력을 가지고, 위 졸업증명서의 발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②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일고 1, 2학년에 재학하지 않았거나 성일고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, ③ 피고인이 성일고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은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,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성일고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은 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, 피고인이 성일고 1, 2학년 과정에 재학하였고 성일고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이 사건 공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 게재 또는 발언 당시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

## 2. 대법원의 판단

### 가. 사건의 쟁점

- ▣ 피고인이 성일고 1, 2학년 과정에 재학하였는지 여부
- ▣ 피고인이 성일고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
- ▣ 피고인의 허위의 인식 여부

### 나. 판결 결과

- ▣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 상고 기각

#### 다. 판단 근거

- ▣ 원심과 같음

### 3. 판결의 의의

- ▣ 피고인이 성일고 1, 2학년 과정에 재학하였고 성일고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이 사건 공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 게재 또는 발언 당시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임